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4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3 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ESG Center

-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세무 및 법률정보

- 2024 년 세법개정안
-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출처: 금융감독원 2024.7.5]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
-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
-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
 -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3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7.23.(화)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가. 재무사항

- (점검 대상)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 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

- '24.2 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예고한 12 개 항목*을 중점 점검
*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참고

□ (주요 미흡항목)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①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하여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대손충당금 관련)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미기재

(예시)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작성

구분		경과기간				계
		6월 이하	6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특수관계자					
	계					
구성비율						

▸ (재고자산 관련)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재고자산 실사현황* 등 미기재

* 실사일자,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연결·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음

③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의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감사계약 시점과 실제 수행된 시점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를 누락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기						
제××기						
제××기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누락(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				
3				

⑤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 기재 누락

<미흡기재 사례>

- 별도재무상태표에 종속·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 누락

구분	제×3기 (20XX년X월말)	제×2기 (20XX년X월말)	제×1기 (20XX년X월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매출액 등			

※ 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

나. 비재무사항-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점검 대상) '23 년중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2 개사를 선정

◦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 점검

1)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주요 미흡항목) ① 조달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또는 ②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하거나 ③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① 조달금액과 사용금액 간 차이, 계획상 사용용도와 실제 지출내용 간 차이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 했다고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 (A 기업) 운영자금 45 억원을 미사용하여 금액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차이발생사유를 미기재
- ▶ (B 기업) 운영자금 90 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음에도 차이발생사유를 미기재
- ▶ (C 기업) 운영자금 75 억원을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했다고만 기재

② 사업보고서에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모두 미기재 하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D 기업) 운영자금을 타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였고 미사용자금은 보통예금 등에 보관중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향후 사용계획을 미기재

- ③ 동일한 발행건에 자금사용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용목적별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한 행에 모든 사용금액을 기재

<미흡기재 사례>

▸ (E 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금액을 합하여 기재

2)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주요 미흡항목) ① 실투자기간, ② 운용상품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① 실투자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계약기간으로 오기재

<미흡기재 사례>

▸ (F 기업) 작성기준일 현재 실투자기간이 4개월임에도 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

- ②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축약하여 기재

<미흡기재 사례>

▸ (G 기업) 운용상품명에 증권명이 아닌 AB 단기사채 발행인명만 기재

다. 비재무사항 - 합병등의 사후정보

- (점검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스펙합병 상장기업 중 '23 년을 실적 추정기간의 1 차연도* 또는 2 차연도*로 산정한 31 개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11-4-8②)이 1 차연도 및 2 차연도의 예측치와 실적치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

-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괴리율 수치 부호 등 기재 적정성 및 항목별 괴리율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를 점검

①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 (주요 미흡항목)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를 미기재하거나 합병등의 사후정보 1 차연도 기산점을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시 1 차연도를 영업실적 추정기간의 1 차연도가 아닌 사업보고서 대상연도의 1 차연도로 기재

<미흡기재 사례>

◦ (H 기업) 합병 당시 '22~'26 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으나, '23 년 사업보고서상 예측치와 실적치의 1 차연도를 '23 년으로 기재하여 '22 년 예측치 실적치 등 미기재

② 괴리율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 (주요 미흡항목) 괴리율 산정시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괴리율 수치 및 부호를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합병 당시 비상장법인의 예측치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추정하였음에도 실적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오기재
- 괴리율 산식[(예측치-실적치)/예측치X100%]이 작성지침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대로 산정하거나, 예측치와 괴리율을 과소하게 기재

<미흡기재 사례>

◦ (I기업) 실제 영업이익 괴리율은 48%(별도예측치 별도실적치)였음에도 27% (별도예측치·연결실적치)로 과소기재

◦ (J기업) 영업이익의 예측치를 과소하게 기재하여 실적치가 예측치에 미달 (△339백만원)하였음에도 초과(+12백만원)한 것으로 오기재

③ 항목별 괴리율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

- (주요 미흡항목)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미흡기재 사례>

- ▶ (K 기업) 매출액 괴리율이 약 49%였음에도 상세한 분석 없이 고객 사정에 따라 매출 인식이 지연되어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하였다고 기재
- ▶ (L 기업) 영업이익 괴리율이 약 48%였음에도 거시적 요인(중국의 장기적 경기침체 및 러·우 전쟁 등)만을 괴리율 발생원인으로 기재

※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당부사항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① 발행공시*와 사업보고서간 자금사용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 ② 자금사용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내용'은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사용 상세내용을 기재할 필요
 -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이 있는 경우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을 반드시 기재
- 합병등의 사후정보
 - 공시정보 이용자가 합병등의 사후정보 내용을 통해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14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12개 항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 1)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 2)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1)
-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 4)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 5)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공시서식 §5-3-2)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3)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 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2 비재무공시사항(2개 항목)

- (1)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서식 §5-7-3)
- (2) 합병등의 사후정보 (공시서식 §11-4-8)

ESG 센터
02 - 6916 - 5919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저자 : Christopher McClure, Brian R. Nappi, Stefany Samp

번역 및 편집 : 오지형 한올회계법인 ESG 센터장

(이하는 Crowe US 에서 공개한 Article을 원문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 및 수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은 ESG 전략 실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내부감사 기능이 ESG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부감사 기능은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의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가능한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변화 시기에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 **규제 변화 시기에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기후 정보 공시 등 ESG 전략 실행에 내부감사 기능이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rbanes-Oxley, 개인 데이터/정보 보호 등 수년 간 직면해 온 변화를 돌이켜 보면 조속한 참여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부감사 기능은 규제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규 프로세스 수립, 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공시 요구 사항 및 기타 ESG 테마가 기업의 위험 평가 과정에서 중요해짐에 따라 ESG 관련 규제, 위험 및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참여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가? 경영진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ESG 환경이 기업 및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내부감사 기능의 경우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ESG 관련 변화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변화 사항이 기업의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경영진에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것입니다.

Cross-Functional
ESG 조직에서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 **Cross-Functional ESG 조직에서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ESG는 기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고 보증, 자문, 관리 업무에 대한 R&R 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구조 확립, 정책 개발, 표준 수립, ESG 관련 이니셔티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Cross-Functional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직을 조기에 구성함으로써 기업은 제 3 자의 Assurance 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에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SG 조직에서 내부감사 기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ESG 조직은 위험 평가, 통제 평가, 보고 모니터링 등에서 내부감사 기능의 Know-How 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은 기업이 ESG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 평가 및 대응하는 과정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Cross-Functional ESG 조직의 역할

□ Cross-Functional ESG 조직의 역할

Board	Compliance and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rnal au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 Strategy · Governance structure · Policy · Sub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standards · Required risk assessments · New initiative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jective evaluation of design and operating effectiveness · Auditing of reporting metrics · Assistance with materiality assessments · Advisory services Internal controls training

ESG 전략 실행에 내부감사 기능의 참여

□ ESG 전략 실행에 내부감사 기능의 참여

제 3 자의 Assurance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내부감사 기능이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참여하면 경영진에서 Assurance 절차 후에 핵심 프로세스 및 통제를 재설계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은 관련 위험, 지표 및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부감사 또는 외부 Assurance 과정에서 직면하는 ESG 관련 이슈는 다양하지만, 다양성 및 형평성은 대표적인 공통 주제입니다. 이는 새로운 규제 의무 및 Assurance 요구 사항의 가능성과 함께 ESG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단, 내부감사 기능에서 제시하는 실무 애플리케이션 및 수행방안은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험 또한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특정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사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자재 조달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통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신뢰성과 조직 통제의 효율성 평가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ESG 변화 사항이 규제화 되기 전에 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감사 기능은 독립적인 검토자로서 초기부터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여 기업이 향후 제 3 자 Assurance 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SG 동향 및
규제 변화에 적응****□ ESG 동향 및 규제 변화에 적응**

ESG 규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반 표준 및 프레임워크, 산업별 리소스 목록을 유지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포함한 기업 내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ESG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Cross-Functional 조직을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설정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ESG 컨트롤러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내부감사 기능 참여, 기업 내 교육 확대, 제 3 자 협업 등을 통해 Cross-Functional ESG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함으로써 기업이 ESG 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 규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한올 ESG 센터장 오지형 파트너 / 02-6916-5919 , ESG@crowe.kr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24.7.25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2024년 세제개편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①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인정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 적용)

② (기타비용)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 (현행)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D 공제율 적용

-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개정안) 목적 제한 폐지

③ (인력개발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에 대해 공제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상시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등 제외 근로자	→	계속고용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 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1년 ↑), 단시간 (주 15시간 ↑) 등			기간제(1개월 ↑), 단시간(전체)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 (일용직 제외)
- 제외	기간제(1년 ↓), 초단시간 (주 15시간 ↓)	→	탄력고용	

- (계속고용)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

- (탄력고용)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 현행 >					< 개정안 >				
① 기본공제					■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공제규모 (단위:만원, %)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② 추가공제					탄력 고용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임금증가율			
	중소	중견				3% ~ 20%	20% 초과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임금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10%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1,300		900		임금증가율 20% 초과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②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

- (사후관리 폐지)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

* (현행)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정 →
(개정안)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 (고용인원 계산*)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

* (현행)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최소 고용증가 기준)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2) 기업 경쟁력 제고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다만,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령)

- ①밸류업·②스케일업·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 확대)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①밸류업, ②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 가업영위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300/400/600억원 → 600/800/1,200억원

- ③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구분	세부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① 밸류업 우수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② 스케일업 우수기업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 ('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3) 기업 경쟁력 제고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조특법)

-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②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 ②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 자사주소각 금액
- 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 (공제 대상 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 (공제율) 5%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frac{\text{분리과세 소득 금액 비율}}{\text{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times 10\%} = \frac{\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text{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고 45% → 25%,
-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2. 민생경제 회복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중부령)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중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 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2) 비과세·감면 정비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3) 세원투명성 제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 ①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 <과소·미신고>(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 <거짓·미소명>(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024년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됨.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였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 인하
 -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됨.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 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임.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금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사전법규소득 2023-824, 2024.07.10)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1년 AAA(주) 한국지점에 최초 입사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중간정산 후,

- 2005년 X월부터 인사발령에 따라 해외에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2014년 X월 국내로 복귀하여 2023년 XX월 BBB(주)에서 희망퇴직하였음.
- 회사측의 조직변경이 있어 근무처는 변경되었지만 모회사는 동일하며, 해외 근무 또한 모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로의 전출임.

- 질의인은 희망퇴직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 퇴직소득은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연금계좌로 전환하였음.

- 회사에서 희망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질의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해외 근무기간이 있는 거주자인 희망퇴직자의 희망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산정 시, 근속연수 및 세액산정방법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 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서면법규국조 2024-16, 2024.05.2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100% 자회사 베트남 법인(이하 "A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 27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A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T Consulting ▪ CRM / Risk Management 등 ▪ ESG 전략 및 시스템 구축자문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